

2024년 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기술포럼 제1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24. 1. 15.(월), 10: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삼기(위원장), 김정희, 서도식, 신타근,
심연옥, 이은주, 임승택, 장남원, 진명(정혜린)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국 가 무 형 문 화 재 종 목 지 정 업 무 절 차

업무처리 절차	구체적인 실행 내용
○ 시·도지사 추천 접수(전년도) ↓	○ 광역지자체 대상 신규 종목 지정 추천 접수
○ 관계전문가 검토(전년도) ↓	○ 해당 종목 관계전문가 검토 실시 -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결과 검토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 ↓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매년 1월 31일까지)
○ 조사단 구성 ↓	○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 관련 학회 등 추천,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 ※ 연구용역으로 진행 시 해당 절차 생략
○ 종목 지정가치 조사 실시 ↓	○ 전승가치(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대표성 등) 및 전승환경(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등 조사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 지정가치 조사 결과 검토 - 종목만 지정 시 : 지정 예고 여부 검토 -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시 : 인정 절차 진행 ※ 보유자(단체) 인정 절차 추진 시 인정검토 완료 후 관보 공고
○ 종목 지정 예고 관보 공고 ↓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30일) 및 의견 수렴 ※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 종목 지정 관보 고시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고시

국 가 무 형 문 화 재 보 유 자 인 정 업 무 절 차

업무처리 절차	구체적인 실행 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매년 1월 31일까지)
↓	
○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자 공모	○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 공모 게시, 신청서 접수
↓	
○ 조사단 구성	○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 관련 학회 등 추천,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
↓	
○ 보유자 인정조사(1단계) 실시	○ 서면조사(신청서 및 동영상 자료 포함)
↓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1단계 조사 결과 검토, 2단계 조사대상자 선정
↓	
○ 보유자 인정조사(2단계) 실시	○ 현장조사(실연) 및 면담
↓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2단계 조사 결과 검토, 3단계 조사대상자 선정
↓	
○ 보유자 인정조사(3단계) 실시	○ 심층 기량조사(실연)
↓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3단계 조사 결과 검토,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	
○ 보유자 인정 예고 관보 공고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30일) 및 의견 수렴 ※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
↓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
↓	
○ 보유자 인정 관보 고시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통지 - 인정서 교부, 전승지원금 지급

목 차

【검토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3
2	국가무형문화재 ‘칠장’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6
3	국가무형문화재 ‘옥장’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22

검 토 사 항

1.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 비공개)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2. 국가무형문화재 ‘칠장’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칠장’ 보유자 인정 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칠장’에 대하여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23.4.5.) 결과를 무형문화재위원회 제3차 회의('23.5.25.)에서 검토한 결과 ‘칠장’에 조사대상자 등 3인을 보유자 인정조사 2·3단계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선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인정조사 2·3단계를 실시('23.11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무형문화재 ‘칠장’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칠장’
- 지 정 일 : 2001.3.12.
- 전승자 현황 : 보유자 1[정수화('54/'01.3.12.)], 전승교육사 1[이상목('67/'08.12.30.)]

2) 추진경과

- ('23.1.17.) 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
- ('23.2.20.~3.30.) 국가무형문화재 ‘칠장’ 보유자 인정조사 공모 및 접수
- ('23.4.5.) 칠장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실시
 - 조사자: 관계전문가 4명
 - 조사대상자: 10명
 - 조사내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의 1단계 조사지표(개인종목)에 따른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평가
 - 조사방법: 제출 서류 및 동영상 자료 평가
- ('23.5.25.) 칠장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결과 검토
 - 조사대상자 3인에 대해 2·3단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23.11월) 칠장 보유자 인정조사 2·3단계 실시
 - 조사자: 관계전문가 4명
 - 조사대상자: 3명
 - 조사방법: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의 2,3단계 조사지표(개인종목)에 따른 전승기량 및 역량, 전승기반 평가
 - 전승기량 실기능력 지표
 - 전승기량 및 역량(140점): 실기능력(100), 종목이해도(20), 교수능력(20)
 - 전승환경(20점): 조사대상자의 시설·장비수준(10) 및 전승의지(10)
- *2,3단계 통합조사로 2단계 조사지표 적용하되, 실기능력은 3단계 배점적용→100점 만점 환산
 - 지표별 평가방법
 - ‘실기능력’은 ‘생칠 정제’ 전체 제작과정으로 함
 - ‘교수능력’, ‘해당종목의 이해도’ 및 ‘전승의지’는 제작공정별 설명과 별도 면담을 통해 평가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칠장’ 보유자 인정 예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결사항

- 부결함
 - 조사대상자의 칠장 보유자 인정 예고를 부결함
- 의결정족사항: 출석 9명, 부결 9명

바. 특기사항

- 해당없음

3. 국가무형문화재 ‘옥장’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 비공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